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89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4. 7. 25. 에스에이치공사와 위 공사가 시행하는 C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서울 강서구 D 일원(V2) 보육시설용지 330㎡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원고 B는 같은 날 위 공사와 위 사업지구 내 서울 강서구 E 일원(V1) 보육시설용지 330㎡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용지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2015. 3. 23. 위 공사에게 위 각 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 · 운영 용도(이하 '보육시설용도'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위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재산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8. 기각되었고, 2016.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착공 내지 착공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보육시설 건물의 설계,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 등 보육시설의 건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보육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보육시설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 건물의 설계,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 등 위 각 토지를 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에스에이치공사가 2016년 하반기에나 착공 가능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조기에 분양하였음에도 잔금 납입기일을 연장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들의 건축심의 신청이 부결되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육시설의 착공이 지연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1) 원고들이 에스에이치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의 표시

원고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면적
A	서울 강서구 F	D 일원(V2)	보육시설용지	330㎡
B	서울 강서구 G	E 일원(V1)	보육시설용지	330㎡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 원고 A

구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총액	1,200,000,000		100%
계약금	240,000,000	계약체결시	20%
1차 중도금	360,000,000	2014. 10. 31.	30%
잔금	600,000,000	2014. 12. 31.	50%

- 원고 B

구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총액	1,215,800,000		100%
계약금	243,160,000	계약체결시	20%
1차 중도금	364,740,000	2014. 10. 31.	30%
잔금	607,900,000	2014. 12. 31.	50%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원고들이 대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에스에이치공사는 조성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관리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제4조(면적의 정산) ① 대상토지는 조성사업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토지로서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① 원고들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 이전) 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들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후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후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에스에이치공사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보육시설용지는 문화공원 내 용지로써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착공이 가능합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 지급시기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에스에이치공사는 2015. 1. 28.부터 2015. 3. 1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잔금 납부를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2015. 3. 23.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5. 15.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보육시설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원고 A는 취득세 등 합계 54,120,000원, 원고 B는 취득세 등 합계 47,537,780원을 각 감면받았는데, 원고들은 감면신청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서

- 동 취득 물건지의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 현재 공급 토지는 보육시설용지로 문화공원 내 용지로서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근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착공계 제출 등)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보육목표 및 기본방향(운영방침)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토지 공급자(매도인)인 에스에이치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기하겠습니다.

4) 원고들은 2016. 1. 18. H(건축사무소 I)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4. 피고에게 보육시설 건축신청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5) 에스에이치공사는 2016. 2. 2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건축착공용)을 하였다.

- 기반시설물 이용 및 사용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며, 기반시설의 파손, 손상시 원상복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동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토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원,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직접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조성공사로 인한 불편, 간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공급함에 따른 지적경계불분명 등으로 인허가 여부 및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한다. - 해당 토지는 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조성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착공상의 모든 문제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은 2016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반설치 완료 전 공사시 필요한 상수, 오수, 우수 등은 사용인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 사용자가 시행하는 공사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관련 비용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 및 부담하여야 한다.

6) 2016. 2. 25. 개최된 피고의 2016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인접 공원과의 연계성 부족, 사업지 전면 드롭 존 설치 검토, 주출입구 진입공간 확대, 보일러실 재배치, 필로티 천정의 불연재료 마감, 화장실 환기대책 마련 등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육시설 건축신청에 대해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7) 원고들은 2016. 3. 21. 피고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2016. 4. 7. 개최된 피고의 2016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조건부 동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8) 원고들은 2016. 4. 21.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6. 5. 13.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5. 25. 주식회사 디엠종합건설과 이 사건 각 토지상 보육시설 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13. 피고에게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보육시설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 건물의 설계,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시설을 착공하는데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토지를 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육시설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고 94누127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5조 제1항에 '원고들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보육시설용지는 문화공원 내 용지로써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착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취득세 감면 신청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보육시설용지로 문화공원 내 용지로서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근거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착공계 제출 등)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위 각 토지의 특성상 1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위 각 토지를 보육시설용도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2016. 3. 23.까지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원고들이 인지한 위 장애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보육시설의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9, 1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추징유예기간이 종료하기 불과 2달 전에 비로소 피고에게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 추징유예기간이 종료하기 불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1달 전에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원고들이 직접 설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점, ② 원고는 건축심의 신청이 부결되어 착공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부결 사유는 '인접 공원과의 연계성 부족, 사업지 전면 드롭 존 설치 검토, 주출입구 진입공간 확대, 보일러실 재배치, 필로티 천정의 불연재료 마감, 화장실 환기대책 마련' 등 대부분 건축설계상의 수정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 건축심의 신청 부결은 에스에이치공사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추징유예기간을 도과하여 2016. 6. 13.에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8. 21.경까지도 그 경계에 펜스가 둘러쳐져 주변 다른 토지와 구분되어 있을 뿐,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에스에이치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개발진행상황에 따라 착공가능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추징유예기간을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스에이치공사의 계약담당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착공가능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았다거나 에스에이치공사가 잔금지급시기를 연장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추징유예기간 내에 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강동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표]

(단위 : 원)

원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A	49,180,320	4,102,030	2,051,010	55,333,360
B	49,827,860	4,156,040	2,078,020	56,061,9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4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 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끝.